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38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김대식 · 김위상 · 조정훈
이현승 · 고동진 · 곽규택
우재준 · 이만희 · 최보운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5호 중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의료인,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간호조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 략)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u>의료인 및 의료기사</u>	15. ----- ----- -----의료인, 의 <u>료기사 및 간호조무사</u>
16. ~ 27. (생 략)	16. ~ 27.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